

보도자료

2010년 8월 17일(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(2430) 나. 방송운영총괄과 김재영과장(2310)

[보고안건]

가.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(2470)

2010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KBS 경인 제1TV 허가 및 KBS 제1TV 변경허가에 관한 건
(첨부1 참조)

- 한국방송공사의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허가여부와
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
결과,
- 한국방송공사의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에 대해서는
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하고

< 권고 사항 >

- KBS 로컬비율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시, 이에 맞추어 경인 제1TV의 로컬
프로그램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
- 로컬비율, 인력 및 예산 등이 확대되는 시점에 독자적인 시청자 권익보호
방안을 확립할 것
- KBS 경인 제1TV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경인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
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

— < 허가 조건 > —

- 방송구역 조정 과정에서 난시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, 반기별로 난시청 등 KBS 경인 제1TV 시청과 관련한 민원 내용(처리결과 포함)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
- 경인지역의 KBS 경인 제1TV 가시청가구 비율 확대를 위한 시설 보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, 제출한 계획을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
 - 매년 말 기준으로 경인지역의 KBS 경인 제1TV 가시청가구 수와 비율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
-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,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디지털TV와 동시 방송하여야 하며, 아날로그TV방송 종료시 아날로그TV 주파수를 반납할 것
-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
-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
- 방송구역 내의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

- 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중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가시청 지역에 포함되는 경인지역을 삭제, 조정하여 변경허가하기로 의결함

나. MBC-TV '개인의 취향' 재심에 관한 건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시청자에 대한 사과' 제재 조치 처분('10. 6. 28.)에 대해 (주)문화방송이 재심을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,
- MBC-TV '개인의 취향'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(주)문화방송의 재심청구에 대해 제재조치를 '경고'로 완화하기로 의결함

원심 주요내용('10. 6. 28. 처분)

- 프로그램 : **MBC-TV '개인의 취향'** (2010.4.7(수), 4.8(목), 4.15(목), 4.21(수), 4.22(목), 5.5(수), 5.6(목), 21:45-23:05 방송)
- 제재조치 : 시청자에 대한 사과 (광고효과의 제한 조항 위반)
- 위반내용 : ○ 건축설계사와 가구디자이너의 사랑을 그린 미니시리즈에서,
 - ① 배경이 되는 건축설계 대상 건물명을 협찬주명(다암 예술원)과 유사한 '담 예술원'으로 설정하고,
 - ② 동 명칭과 '주거용 스튜디오', '복합문화공간' 등 해당 건물의 특징점을 방송전반에 걸쳐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제공

[보고안전]

가.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(안)에 관한 사항(첨부2 참조)

- 사업자 선정방식과 주요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 「종합편성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(안)」을 마련하여 보고함

< 승인가본계획(안)의 주요내용 >

- ① 사업자 선정방식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
- ②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
- ③ 승인 최저점수 설정 등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
- ④ 향후계획

- 「종합편성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가본계획(안)」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9월에 의결될 예정이며,
 -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임

〈첨부1〉

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 허가 개요

방송국명	KBS 경인 제1TV 방송국		KBS 경인제1DTV 방송국
법 인 명	한국방송공사		
방송사항	방송사항 전반 (상업광고 방송불가)		
소 재 지	연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86번지 송신소 : 경기 양평군 옥천면 산 25-1(용문산)		
운용채널	CH 32 (581 MHz)		CH 42 (641 MHz)
방송구역	경기도		
	○ 일원 : 여주군, 이천시, 부천시 오정구, 인천광역시 계양구, 인천광역시 부평구	○ 일원 : 여주군, 이천시, 부천시 오정구, 인천광역시 계양구, 인천광역시 부평구, 양평군	
	○ 일부 : 양평군, 가평군, 과천시, 광명시, 광주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부천시 소사구, 부천시 원미구, 용인시 수지구, 평택시, 인천광역시 중구	○ 일부 : 양평군, 가평군, 과천시, 광명시, 광주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부천시 소사구, 부천시 원미구, 용인시 수지구, 평택시, 인천광역시 중구 및 서구	

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구역 변경허가

□ 변경허가 사유

-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 개설에 따른 방송구역 변경

□ 변경허가 주요내용

방송국명	방송구역	
	변경전	변경후
KBS 제1TV 방송국	○ 일원 : 서울, 인천, 고양, 수원, 성남, 광명, 부천, 안양, 구리, 안산, 과천, 오산, 의왕, 시흥, 군포, 하남, 김포, 화성시 ○ 일부 : 의정부, 남양주, 동두천, 평택, 서산, 파주, 용인, 안성, 광주시, 양주, 포천, 가평, 양평, 당진군	○ 일원 : 서울 ○ 일부 : 인천, 고양, 수원, 성남, 광명, 부천, 안양, 구리, 안산, 과천, 오산, 의왕, 시흥, 군포, 하남, 김포, 화성시
KBS 제1DTV 방송국	○ 일원 : 서울, 과천, 안양, 고양, 인천, 부천, 구리, 평택, 안산, 성남, 광명, 수원, 시흥, 오산, 군포, 의왕, 하남, 김포 ○ 일부 : 의정부, 남양주, 파주, 용인, 안성, 이천, 화성, 광주시, 양주군	○ 일원 : 서울, 과천, 안양, 고양 ○ 일부 : 의정부, 남양주, 파주, 용인, 안성, 이천, 화성, 광주시, 양주군, 인천, 부천, 구리, 평택, 안산, 성남, 광명, 수원, 시흥, 오산, 군포, 의왕, 하남, 김포

종편·보도PP 승인 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1.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

- (사업자 선정방식)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,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 제시
- (사업자 수)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,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를 각각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
 -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,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
 -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,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
- (사업자 군 구분 여부)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할 때, 사업자 군(언론사군/대기업군/기타기업군 등)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방안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
- (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)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,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

2.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

- (심사사항 구성) 방송법 제10조(심사기준·절차) 제1항을 토대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
 - ※ <심사기준 단계> 심사사항(대분류) → 심사항목(중분류) → 세부심사항목(소분류)

-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 허가·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'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'은 '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'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

【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~6호】

- ①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
-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
- ③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
-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-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
-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



【심사사항 구성(안)】

- ①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
-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
-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-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
-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

- **(심사사항별 배점)** 정책목표와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특성, 기존 허가·승인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사항별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
-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,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 방안, 콘텐츠 경쟁력,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고,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
- 배점 부여 방안은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(1안),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(2안)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(3안)의 세 가지로 제시
-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,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 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
- 배점 부여 방안은 정책목표를 고려한 방안(1안)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(2안)의 두 가지로 제시

【심사사항 배점(단위 : %)】

심사사항	종합편성			보도전문	
	1안	2안	3안	1안	2안
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	25	23	24	30	24
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	25	27	24	20	24
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3	23	20	25	20
재정 및 기술적 능력	15	15	20	15	20
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	12	12	12	10	12
합 계	100	100	100	100	100

○ **(심사사항별 주요 내용)**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, 납입자본금 규모, 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 등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는 등 총 1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- **(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)**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방안 등을 심사

※ ①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,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,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, ④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 등 4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

- **(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)**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·제작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, 우수성,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※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,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,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

- **(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)** 시장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, 재무, 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

※ ① 사업추진계획,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, ③ 납입자본금 규모,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, ⑤ 사업성 분석, ⑥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 등 6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- **(재정 및 기술적 능력)** 신청법인(컨소시엄)의 재무적 안정성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 운영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능력을 심사

※ ① 재정적 능력, ② 자금출자 능력, ③ 기술적 능력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

- **(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)** 방송 사업 또는 방송관련 사업 등을 통한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

※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, ② 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, ③ 출연금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3.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

- **(승인 최저점수 설정)** ① 전체 총점, ② 심사사항별(대분류) 총점, ③ 심사항목별(중분류)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

-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까지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되, 전체 총점은 80% 이상, 심사사항별 총점은 70% 이상, 심사항목별 총점은 50% 이상으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

※ 승인 심사시, '80% 이상'은 매우 우수, '60% 이상~80% 미만'은 우수, '40% 이상~60% 미만'은 보통 수준이라는 의미를 부여

- **(납입자본금)**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와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

- **(최소 납입자본금 규모)**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,000억원,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400억원으로 제시

- **(심사방안)** 절대평가시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%,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,

- 비교평가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

○ **(출연금)** 신규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

- **(최소 출연금 규모)**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% 이내에서 결정
- **(심사방안)** 절대평가시에는 최소 출연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%,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,
- 비교평가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

○ **(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소유)** 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

※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: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

- 이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, ①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,
-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,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
- ②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(컨소시엄)이 복수의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,
- ‘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’는 내용의 ‘승인 신청 철회계획’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,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

- (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) 어느 한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하는 방안(1안)과,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(2안)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

- 1안으로 결정하는 경우, 어느 한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* 이상 참여하는 것을 감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

※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5% 이내에서 결정

- 2안으로 결정하는 경우,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

4. 향후 일정

- 공청회 개최(9월초) 등 온·오프라인 병행하여 기본계획(안) 의견수렴
- 「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」 의결(9월 중순)
-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위원회 보고(9월 중) 및 의결(10월 중)
- 신청 공고(10월 ~ 11월 중) 및 신청 요령 설명회
- 「심사계획」 의결(11월 ~ 12월 중)
- 심사위원회 운영(12월 중)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

※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